

## 투 자 설 명 서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3호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3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3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3호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3. 판 매 회 사 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외환은행	☎ 02-3709-8000	SK증권	☎ 02-3773-8245
대구은행	☎ 053-756-200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 02-3702-3114
동부증권	☎ 02-369-3000	신한은행	☎ 756-0505
교보증권	☎ 02-3771-9000	국민은행	☎ 1588-9999
부국증권	☎ 02-368-9200	미래에셋생명보험	☎ 1588-0220
한국투자증권	☎ 1588-0012	부산은행	☎ 051-642-3300
유진투자증권	☎ 02-368-6114	경남은행	☎ 055-290-8000
한불증권	☎ 02-3708-7665	현대증권(주)	☎ 768-0114
교보생명	☎ 1588-1001	제주은행	☎ 1588-0079
우리은행	☎ 2002-3000	하나은행	☎ 1588-1111
브릿지증권	☎ 02-771-0900	기업은행	☎ 1588-2588
미래에셋증권	☎ 02-3774-1700	우리투자증권	☎ 02-768-7000
푸르덴셜투자증권	☎ 3770-7114	동양종합금융증권	☎ 1588-260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8 년 12 월 15 일
5. 투 자 설 명 서 비 치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공시 및 인터넷 <http://www.miraeasset.co.kr> <http://www.amak.or.kr>  
게 시 주 소 판매회사 홈페이지는 본문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투자설명서 본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 나. 연평균 수익률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 II. 자산의 평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

정기준

### IV. 매입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핵심설명서)

###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5 쪽)

1. 명 칭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3 호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 II 투자정보(본문 5~8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등, 기업어음 등, 유동성자산에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 Bottom-up 전략과 Top-down 전략의 병행 - 사전 재무분석 및 탐방을 기초로 한 철저한 기업 / 산업 분석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miraeasset.co.kr">www.miraeasset.co.kr</a> ) 에서 확인가능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운용 자산규모(억)	
손동식	1963	대표	10	59,240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3호 미래에셋솔로몬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4호 등

### 7.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연도	최근 1년 (07.03.11~08.03.10)	최근 2년 (06.03.011~08.03.10)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5.12.07~08.03.10)
투자신탁	28.88%	17.8%	-	-	15.95%
비교지수*	14.16%	10.96	-	-	9.6%

\*비교지수 = KOSPI x 100%  
\* Class I :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0~11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I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 없음	간접투자기구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sup>1)</sup>	납입금액 1.0%	납입금액 0.5%	
	<b>환매수수료(90 일 미만 환매시)<sup>1)</sup></b>	<b>없음</b>	<b>없음</b>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80%	연 0.80%
		판매회사보수	연 0.75%	연 0.03%
		기타보수	연 0.05%	연 0.05%
		<b>보수합계</b>	<b>연 1.60%</b>	<b>연 0.88%</b>
	기타비용 <sup>3)</sup>	연 0.71%	연 0.71%	
<b>총보수·비용비율<sup>2)</sup></b>		<b>연 2.31%</b>	<b>연 1.59%</b>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 3) 기타비용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은 다를 수 있음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10.0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단 2009.12.31 까지 가입한 3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자는 3년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b>다음영업일(D+1)</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b>제 3 영업일(D+2)</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 2 영업일(D+1)</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제 4 영업일(D+3)</b>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 3 영업일(D+2)</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제 4 영업일(D+3)</b>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iraeasset.co.kr)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판매직원 \_\_\_\_\_ 서명 또는 (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 3호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분류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투자신탁명	가입자격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투자신탁 3호 (Class-A)	제한없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투자신탁 3호 (Class-I)	간접투자기구

※ 각 종류간 전환할 수 없음.

- 4.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5.12.7 최초설정  
2006.01.23 종류형변경

### 6. 수탁고추이 (단위 억좌,%)

연도		현재 (08.03.10)	6개월전 (07.09.10)	1년전 (07.03.10)	1년6개월전 (06.09.10)	2년전 (06.03.10)
수탁고	Class A	30,976	8,915	2,929	3,219	3,134
	Class I	-	-	-	1	0.8
수탁고 증가율	ClassA	247.45	204.34	-9	2.71	-
	Class I	-	-	-	83.64	-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등, 기업어음등, 유동성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로서 자산총액의 60% 이상, 100%까지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투자전략

#### (1) 투자원칙 및 자산배분 전략

- 사전 재무분석 및 탐방을 기초로 한 철저한 기업/산업 분석을 토대로 편입대상종목을 압축하는 Bottom-up방식을 포트폴리오 운용의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 거시경제 및 해외동향에 대한 Top-down방식의 분석을 병행하여 시장의 작은 장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방식을 추구합니다.
- 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에 60%이상, 채권 및 현금성자산에 40%이하의 편입비율을 유지합니다.
- 시황에 따라 적극적인 선물헤지전략을 구사하여, 실질 편입비율의 탄력적 조정을 통한 시장대응을 합니다.

**(2)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및 투자대상 종목군**

- 포트폴리오: 한부문에 대한 집중투자가 아닌 [대형주+중소형주], [성장주+가치주], [신경제+구경제]의 적절한 균형수준 유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대표 우량주와 저평가 우량종목에 가치투자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12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의 90%내외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위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13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60% 이상~최대 100% 까지 (90%정도)투자하는 상장주식 등은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큼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편입비중이 이 투자신탁 보다 낮은 혼합형투자신탁이나, 채권형투자신탁, MMF투자신탁 등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등급예시>**

1등급	매우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주식형 펀드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경우/주식혼합형 펀드
3등급	중간 위험	주식에 50% 미만 투자하는 경우/채권혼합형 펀드
4등급	낮은 위험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특별자산, 실물자산 펀드 등(신용보강 여부에 따라 조정가능)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펀드

재간접투자기구는 편입한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성격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됨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운용회사(www.miraeasset.co.kr)· 판매회사(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중 "II.판매회사(18쪽)" 참조·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 각 종류별 보수율이 다름에 따라 같은 투자신탁이라도 종류에 따라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손동식	1963	대표	59,240억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3호 미래에셋솔로몬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4호 등

\*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2.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9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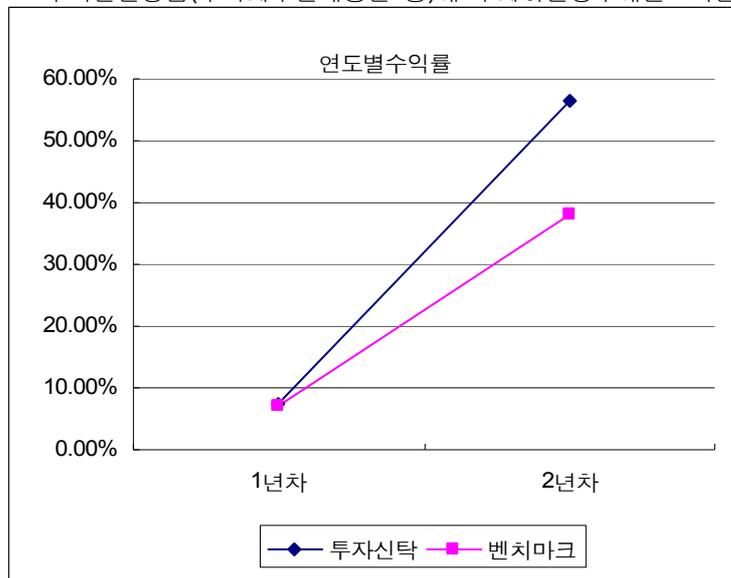
(1) 미래에셋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3호 Class - A

연도	1년차 (05.12.07~ 06.12.06)	2년차 (06.12.07~ 07.12.07)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7.28%	56.54%	-	-	-
비교지수	7.01%	38.16%	-	-	-

※ 비교지수 : KOSPI x 100%

※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수익률"을 기재하였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간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3호 Class - I : 해당사항 없음

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	-	-	-	-
비교지수	-	-	-	-	-

※ 비교지수 : KOSPI x 100%

※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수익률"을 기재하였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간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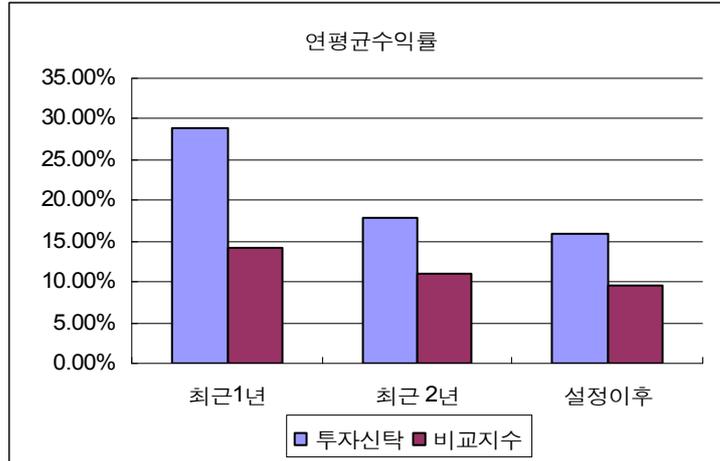
나. 연평균 수익률

(1) 미래에셋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3호 Class - A

연도 (기간)	최근 1년 (07.03.11~ 08.03.10)	최근 2년 (06.03.11~ 08.03.10)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5.12.07~ 08.03.10)
투자신탁	28.88%	17.8%	-	-	15.95%
비교지수	14.16%	10.96	-	-	9.6%

※ 비교지수 : KOSPI x 100%

※ 설정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3호 Class - I : 해당사항 없음

###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의 1.0%	매수시점
	종류 I	납입금액의 0.5%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I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간접투자기구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80%	연 0.8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75%	연 0.03%	
수탁회사 보수	연 0.03%	연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2%	연 0.02%	
기타	실비(0.71%)		-
합 계	연 1.60% + 실비 (0.71%)	연 0.88% + 실비 (0.71%)	-

※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설정이후 1년이 지나

지 않은 펀드의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간접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337	846	1,408	3,078
종류 I	213	564	951	2,100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합니다.

나. “가”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가”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 세액은 법에서 정한 환급비율 내에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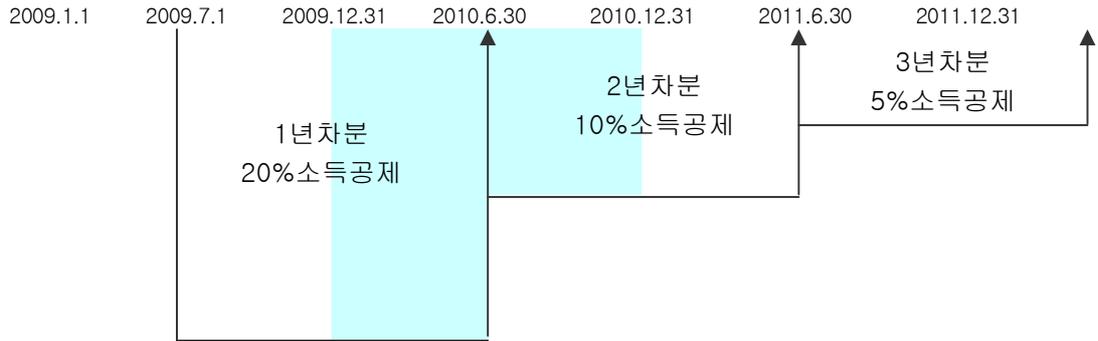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 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가입일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 (16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 환매

####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 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3시) 경과후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주1)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 (16~17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3. 이익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 (17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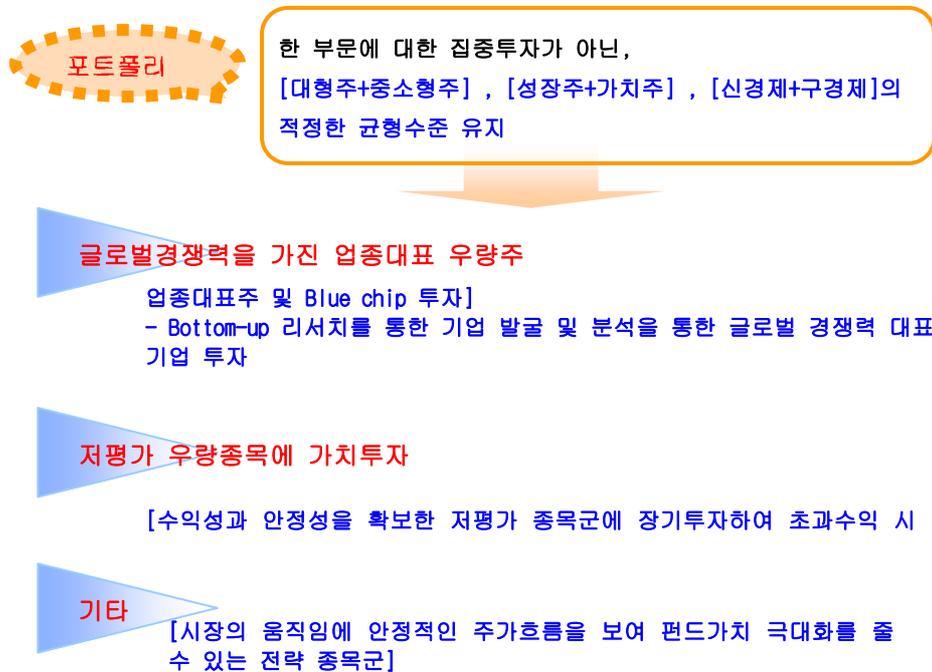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1) 투자원칙 및 자산배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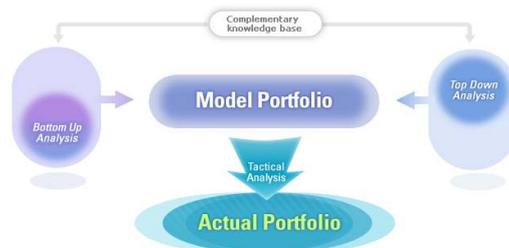
- 사전 재무분석 및 탐방을 기초로 한 철저한 기업/산업 분석을 토대로 편입대상종목을 압축하는 Bottom-up방식을 포트폴리오 운용의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 거시경제 및 해외동향에 대한 Top-down방식의 분석을 병행하여 시장의 작은 장세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방식을 추구합니다.
- 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에 60%이상, 채권 및 현금성자산에 40%이하의 편입비율을 유지합니다.
- 시황에 따라 적극적인 선물헷지전략을 구사하여, 실질 편입비율의 탄력적 조정을 통한 시장대응을 합니다.

##### (2)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및 투자대상 종목군



##### (3)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 투자신탁의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Top-down 접근과 Bottom-up 접근을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합리적인 예측 기준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 이상 (국내주식 60%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 또는 상장예정인 법인이 발행한 공모주권에 한함)
②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함)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⑤	금리스왑	채권또는채무증서 총액의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수익증권등	5%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b>주식선물</b> ,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b>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장내파생상품</b>
⑧	투자증권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⑨	환매조건부 채권의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⑩	단기대출,금융 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⑦의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 대비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적용을 유예함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⑥~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	----	-------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채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받은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li> <li>○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li> </ul>	<p>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동일회사 발행주식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자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투자증권거래>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증권회사 선정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③ 증권회사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10쪽의 매입관련 정보 참조)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전전일 15시 경과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포함)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탁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등>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분배관련 유의사항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 될 수 있습니다.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1.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 7층 Tel : 02) 3774-1500	
회 사 연 력	1997. 07	미래에셋 설립
	1998. 12	자산운용업 등록 (금감위 제1호)
	1998. 12	국내최초 유추얼펀드 “박현주1호” 출시
	2000. 02	제1회 한경 펀드대상 수상
	2002. 01	매경-제로인 선정 펀드대상 수상
	2003. 01	매경 증권인상, 한국펀드대상, 머니투데이 베스트펀드상 수상
	2004. 01	매경 증권인상, 한국펀드대상, 국민연금 우수위탁운용사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05. 01	매경 증권인상, 한경비즈니스 2004년 베스트주식운용사&베스트 펀드
	2005.09	미래에셋 인디아 디스커버리 펀드 출시
	2006.11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합병

### 2. 주요업무

####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케이에프에이씨(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무 및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006.3.31	2007.03.31	항목	2006.3.31	2007.03.31
유동자산	275	1,365	영업수익	478	1,049
고정자산	549	665	영업비용	222	533
<b>자산총계</b>	<b>824</b>	<b>2,030</b>	<b>영업이익</b>	<b>256</b>	<b>516</b>
유동부채	97	226	영업외수익	44	39
고정부채	100	136	영업외비용	22	17
<b>부채총계</b>	<b>197</b>	<b>362</b>	<b>경상이익</b>	<b>278</b>	<b>537</b>
자본금	100	391	특별이익	0	0
자본잉여금	-	391	특별손실	0	0
이익잉여금	533	890			
자본조정	-6	-3	법인세	77	151
<b>자본총계</b>	<b>627</b>	<b>1,669</b>	<b>당기순이익</b>	<b>201</b>	<b>387</b>

#### 4. 운용자산 규모

(2008.03.07 현재)

(단위 : 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466,219	65,284	19,255	15,217	9,635	-	-	1,964	-	577,574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운용경력
손동식	1963	대표	59,240억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3호 미래에셋솔로몬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4호 등

\*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II. 판매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 02-3709-8000	www.keb.co.kr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 053-756-2001	www.dgb.co.kr
동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동 부증권빌딩 ☎ 02-369-3000	www.winnet.co.kr
교보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 02-3771-9000	www.kyobotrade.co.kr
부국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 국증권빌딩 ☎ 02-368-9200	www.bookook.co.kr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1588-0012	www.truefriend.com
SK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02-3773-8245	www.webtrade.co.kr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 02-3702-3114	www.kfb.co.kr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대 경빌딩 신한은행본점 ☎ 756-0505	www.shinhanbank.co.kr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 가 9-1 ☎ 1588-9999	www.kbstar.com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번지 ☎ 1588-0220	www.miraeasset.co.kr
부산은행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 051-642-3300	www.pusanbank.co.kr
유진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02)368-6114	www.eugenefn.com
경남은행	마산시 석전동 246-1 ☎ 055-290-8000	www.knbank.co.kr
한불증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파이낸스빌딩 5 층 ☎02-777-7711	www.sogeko.com
현대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 권빌딩 ☎ 768-0114	www.youfirst.co.kr
교보생명(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 ☎1588-1001	www.kyobo.co.kr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 1588-0079	www.e-jejubank.com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 02-2002-3000	www.wooribank.com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1588-1111	www.hanabank.com
브릿지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8 ☎ 02-771-0900	www.brignefn.com
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 1588-2588	www.kiupbank.co.kr
미래에셋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 래에셋빌딩, ☎02-3774-1700	www.miraeasset.co.kr
우리투자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 증권빌딩☎768-7000	www.wooriwm.com
푸르덴셜투자증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8 ☎ 3770-7114	<a href="http://www.pru.co.kr">www.pru.co.kr</a>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5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TEL:1588-2600	www.myasset.com

##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 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는 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판매행위준칙(이하 "판매행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III.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한국외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 02-3709-80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b.co.kr

####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케이에프에이씨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우.150-994) ☎ 02) 769-78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ikfac.com

#### 2.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 02-739-35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6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koreabp.com">www.koreabp.com</a>	<a href="http://www.npricing.co.kr">www.npricing.co.kr</a>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 2. 주요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 제4부. 수익자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1.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구성과 권한>**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명부>** (1)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증권예탁원에 위탁합니다.  
(2) 증권예탁원은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  
(3)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수익자성명과 수익자 보유 수익증권의 좌수를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명부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

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기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연기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전국지방법원에 관한 정보는 <http://www.scour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6. 기타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 확인장소>**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②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확인장소>** 수시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투자신탁3호

판매일 : \_\_\_\_\_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